

## 新·舊 圖書館法 對照表

舊 法	新 法
<p><b>第1章 總 則</b></p> <p><b>第1條(目的)</b>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 발전을  도모함으로써 國民의 教育和 文化의 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 <p><b>第2條(定義)</b> 이 法에서 “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· 記錄· 視聽覺資料·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· 鄉土資料 및 기타  필요한 資料(이하 “圖書館資料”라 한다)를 蒐集· 整理·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 이용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查· 研究· 學習· 教養· 레크리에이션 기타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.</p>	<p><b>第1章 總 則</b></p> <p><b>第1條(目的)</b>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· 運營과 奉仕에  필요한 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 건전한  육성과  발전을  도모함으로써 社會 各 분야에  대한  知識· 情報의  제공 및 流通의  효율화와 國民의 平生 教育 및 文化發展에 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 <p><b>第2條(定義)</b> 이 法에서 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· 整理· 分析·  보존· 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 이용에 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· 調查· 研究· 學習· 教養 등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 기여하는 施設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圖書館資料(이하 “資料”라 한다)”라 함은 圖書館이 蒐集· 整理· 分析·  보존· 蓄積하는 圖書· 記錄· 小冊子· 連續刊行物· 樂譜· 地圖· 사진· 그림 등  각종 印刷資料, 映畫필름· 슬라이드· 音盤· 마이크로形態物· 테이프 등 視聽覺資料, 電算化資料, 公文書 등 行政資料,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 위하여 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公共圖書館”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· 教養· 調查· 研究 및 教育· 文化活動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</li> <li>4. “大學圖書館”이라 함은 教育法에  의하여 設立된 大學(教育大學· 師範大學· 放送通信大學· 開放大學· 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</li> </ol>

舊 法	新 法
<p>第3條(圖書館의 種類) ①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·公立圖書館·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,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·學校圖書館·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.</p> <p>②前項에서 “公共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保存하여 公衆의 教養과 調査·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.</p> <p>③第1項에서 “學校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保存하여 學生 및 敎員의 學習·敎養·調査·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.</p> <p>④第1項에서 “特殊圖書館”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法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保存하여 그 所屬員의 教養과 調査·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.</p> <p>第4條(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) ①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</p>	<p>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課程 이상의 敎育機關에서 敎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敎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</p> <p>5. “學校圖書館”이라 함은 高等學校 이하의 各級學校(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)에서 敎員과 學生의 敎授·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.</p> <p>6. “專門圖書館”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·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定분야에 관한 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</p> <p>7. “特殊圖書館”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·團體의 所屬員이나 身體障者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게 學習·敎養·調査 및 研究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</p> <p>第3條(圖書館의 종류)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·公立圖書館·私立圖書館으로  구분하고,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·公共圖書館·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 구분한다.</p> <p>第4條(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)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</p>

舊 法	新 法
<p>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<p>第 5 條 (圖書館施設) ①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함에 필요한 建物·圖書館資料·閱覽施設 및 기타의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公共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이용에 便利하고, 保健·衛生 또는 管理에 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閣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 6 條 (司書職員의 配置) ①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관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.</p> <p>②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	<p>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.</p> <p>第 5 條 (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) ① 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② 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社會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第 6 條 (圖書館의 施設·資料) ①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圖書館종류별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 7 條 (司書職員 등) 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필요한 司書職員·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(司書)를 두어야 하며,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教育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 級正司書·2 級正司書 및 准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 8 條 (資料의 交換·移管·폐기 및 除籍) ① 각종 圖書館은 資料의 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相互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値가 喪失 또는 汚損된 資料를 폐기 혹은 除籍할 수 있다.</p> <p>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·移管·폐기 및 除籍의 基準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 9 條 (圖書館發展委員會) ① 圖書館의 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 효율적 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등에 관하여 文教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教部長官 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設置한다.</p> <p>② 委員會의 구성 및 職務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</p>

舊 法	新 法
<div data-bbox="389 305 506 34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신설</div> <div data-bbox="389 625 506 66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신설</div> <div data-bbox="381 1101 498 1136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신설</div> <p data-bbox="148 1346 673 1586">                     第7條(國家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의 향상을위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·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第8條(圖書館의 使用料)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.                 </p>	<p data-bbox="738 268 1087 299">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 data-bbox="717 309 1243 459">                     第10條(圖書館振興基金)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·施設·운영 기타 圖書館振興에 소요되는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를 設置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</p> <p data-bbox="738 469 1163 620">                     ②基金은 다음 각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政府出捐金                      2.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寄附金                      3.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                </p> <p data-bbox="717 629 1243 904">                     第11條(基金의 運用·管理) ①基金은 文敎部長官이 運用·管理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基金의 造成 및 運用に 관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基金造成計劃                      2. 基金運用計劃                      3. 기타 基金運用上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</p> <p data-bbox="738 913 1243 1097">                     ③文敎部長官은 基金의 運用·管理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·直轄市·道の 教育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④基金의 運用·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</p> <p data-bbox="717 1107 1243 1342">                     第12條(租稅減免) ①法人·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·施設·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政府는 第1項에 의하여 圖書館에 寄附한 金錢 기타 財産에 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한다.                 </p> <div data-bbox="906 1358 1023 1392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삭제</div> <p data-bbox="717 1518 1243 1669">                     第30條(使用料·入館料)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公立公共圖書館의 入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                </p>

舊 法	新 法
<p><b>第9條(監督廳)</b> ①私立의 公共圖書館은 第1次로 市·郡教育長(서울特別市·釜山市教育委員會를 포함한다),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, 第3次로 文敎部長官의 地導·監督을 받는다.</p> <p>②學校圖書館은 教育法和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當해 學校의 監督廳의 地導·監督을 받는다.</p>	<p><b>第25條(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監督 등)</b> ①市·郡教育長은 第24條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(이하 "私立公共圖書館"이라 한다)에 대하여 均衡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市·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
<p><b>第10條(停館命令)</b> ①監督廳은 公共圖書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停館을 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美風·良俗을 顯著하게 害하는 行爲가 있을 때.</li> <li>2. 第5條 第3項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維持하지 못한 때.</li> <li>3.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停館의 方法 이외로는 이를 監督할 수 없을 때.</li> </ol>	<p><b>第27條(業務의 정지)</b> 市·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第6條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</li> <li>2.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도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</li> </ol>
<p><b>第11條(廢館申告)</b> ①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當해 圖書館을 廢館한 때에는 그 事由와 圖書에 관한 措置狀況을 밝혀 監督官廳에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.</p>	<p><b>第28條(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)</b> ①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當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·郡教育長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市·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圖書館에 관한 登錄을 抹消한다.</p>
<p><b>第12條(圖書館資料의 제공과 納本)</b> ①國家機關이 官報·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地方自治團體가 公報·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圖書館과 그가 設立한 公共圖書館에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出版社 또는 前2項 이외의 者가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刊行物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.</p> <p>④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刊行物을 納本한 者가 그 刊行物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.</p>	<p><b>第17條(資料의 제공 및 納本)</b>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·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圖書·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.</p> <p>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.</p>

舊 法	新 法
<p>第13條(圖書館協會)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相互間의 資料交換·運營管理에 대한 研究 또는 國際圖書館團體와의 協助 및 기타事項에 관한 協助와 全體圖書館人의 社會的·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.</p> <p>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2章 公共圖書館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1節 總 則</b></p> <p>第14條(設立者) 公共圖書館은 國家·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만이 設置할 수 있다.</p> <p>第15條(公共圖書館의 機能)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公衆에 奉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保存하여 公衆의 이용에 供하고 그 相議에 응하는 일.</li> <li>2. 讀書會·研究會·鑑賞會·展示會 기타 行事를 主催하거나 獎勵하는 일.</li> <li>3. 다른 公共圖書館 또는 學校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과 協助하여 圖書館資料를 相互 交流하는 일.</li> <li>4. 圖書館業務에 관하여 調査·研究하는 일.</li> <li>5.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.</li> </ol>	<p>④國立中央圖書館長은 納本の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⑤納本の 節次·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14條(圖書館協會)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情報資料交換 및 業務協助, 圖書館의 運營·管理에 관한 研究,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 協力,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圖書館協會(이하 "協會"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</p> <p>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.</p> <p>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</p> <p>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3章 公共圖書館</b></p> <p>第19條(設立) 國家·地方自治團體·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</p> <p>第20條(業務)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</li> <li>2.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 제공</li> <li>3. 講演會·鑑賞會·展示會·讀書會 기타 社會教育 및 文化活動의 主催 또는 獎勵</li> <li>4.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交流</li> <li>5. 圖書館業務에 관한 調査·研究</li> <li>6.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</li> </ol>

舊 法	新 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 2 節 國立中央圖書館</b></p> <p><b>第 16 條 (設立)</b> ①文敎部長官所屬下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. ②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.</p> <p><b>第 17 條 (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)</b> 國立中央圖書館은 第15條에 規定한 事項 외에 다음의 事項을 管掌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國家에 관한 文獻의 蒐集 및 保存.</li> <li>2. 國內外書誌의 作成 및 그 紹介.</li> <li>3.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.</li> <li>4. 圖書館學에 대한 調査·研究.</li> <li>5.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 및 援助.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10px auto; padding: 2px 10px;">신설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 2 章 國立中央圖書館</b></p> <p><b>第15條 (國立中央圖書館)</b> ①文敎部長官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. 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.</p> <p><b>第16條 (業務)</b> ①國立中央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國內外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 보존· 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</li> <li>2. 다른 圖書館과의 情報資料의 流通</li> <li>3. 각종 書誌의 作成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</li> <li>4.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情報協力網의 統轄</li> <li>5.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</li> <li>6.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 및 社會教育活動의 地導· 지원</li> <li>7. 圖書館운영에 관한 調査·研究</li> <li>8. 司書職員의 研修</li> <li>9. 기타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</li> </ol> <p>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各號의 業務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20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③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相互協力한다.</p> <p><b>第18條 (國際標準資料番號)</b> ①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(이하 “資料番號”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

舊 法	新 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3節 公立의 公共圖書館</b></p> <p><b>第18條</b>(公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) ①各級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正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. ②前項의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를 두어야하며 地域의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文庫를 둘 수 있다.</p> <p><b>第19條</b>(補助) 國庫는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당해 圖書館의 施設과 設備에 요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신설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신설</div>	<p><b>第21條</b>(公共圖書館의 設置·육성 등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教育和 文化發展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·육성하여야 한다. ②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·老人·身體障者들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. ③公共圖書館은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圖書館을 둘 수 있다.</p> <p><b>第22條</b>(公立公共圖書館의  운영)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(이하 “公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의  운영비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. ②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施設·資料 및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><b>第23條</b>(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) ① 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. ②公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의  효율적인  운영을 위하여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. ③圖書館運營委員會의  구성 및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</p> <p><b>第31條</b>(資料의  제공) 地方自治團體가 圖書·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料를 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<b>第24條</b>(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)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·團體 또는 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·郡教育長(서울特別市·直轄市의 教育區總長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4節 私立의 公共圖書館</b></p> <p><b>第20條</b>(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)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第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閣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廳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.</p>	



舊 法	新 法
<p>第 21 條(私立的 公共圖書館에 대한 補助) ②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私立的 公共圖書館으로서 閣令이 정하는 司書職員을 두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그 設立者에 대하여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>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를 한 때에는 그 補助를 받은 私立的 公共圖書館의 設立者에 대하여 특별한 指導·監督을 할 수 있다.</p> <p>第 22 條(指導·助言 및 是正命令)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的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그 運營에 관하여 專門인 指導와 助言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的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또는 運營 기타에 관하여 法令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命할 수 있다.</p> <p>第 23 條(보고) 監督廳은 私立的 公共圖書館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第 24 條(圖書館과 同種의 施設) 누구든지 圖書館과 同種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. 다만,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第29條(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>第26條(是正命令) 市·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및 운영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立目的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.</p> <div data-bbox="920 929 1037 967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삭제</div> <p>第13條(類似名稱 使用禁止)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.</p>
<div data-bbox="367 1246 481 1284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신설</div> <div data-bbox="367 1406 481 1445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신설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第 4 章 大學圖書館</p> <p>第32條(設置)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 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</p> <p>第 33 條(業務)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그 이용</li> <li>2.  효율적 教育課程의  수행을 위한 지원</li> <li>3.  圖書館利用의 體系的 指導</li> <li>4. 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情報網을 통한 情報資料의 流通</li> </ol>

舊 法	新 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 3 章 學校圖書館</b></p> <p>第 25 條(設置) ①國民學校·中學校·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, 實業高等專門學校·初級大學·大學(校)·教育大學·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②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 26 條(職員)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담당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·初級大學·大學(校)·教育大學·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, 國民學校·中學校·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.</p> <p>第 27 條(一般의 이용에의 제공) 學校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公衆의 이용에  제공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	<p>5.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技能遂行에  필요한 業務</p> <p>第 34 條(指導·監督) 大學圖書館은 教育法和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 5 章 學校圖書館</b></p> <p>第 35 條(設置) 國民學校·中學校·高等學校(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)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제</p> <p>第 36 條(業務)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學校教育에  필요한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 보존·蓄積 및 그 이용</li> <li>2.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의 指導</li> <li>3. 視聽覺資料의 開發·製作 및 이용</li> <li>4.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 필요한 業務</li> </ol> <p>第 37 條(指導·監督) 學校圖書館은 教育法和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</p>

舊 法	新 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</b></p> <p><b>第 38 條 (設立 등)</b> ① 國家·地方自治團體·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</p> <p>② 國家는 특정분야별로 專門的인 圖書館을 設立·운영할 수 있으며, 특정분야별 資料確保 및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大學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중에서 지정하여 專門圖書館의 機能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身體障礙者의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에 의한 設立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·郡教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</p> <p><b>第 39 條 (指導·監督 등)</b> ① 市·郡教育長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市·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文敎部長官은 專門圖書館과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政策의 수립에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<b>第 40 條 (準用)</b> 第7條第1項의 規定은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, 第26條 내지 第29條의 規定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.</p>

舊 法	新 法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第 7 章 圖書館情報協力網</b></p> <p><b>第 41 條 (圖書館情報協力網 구성)</b> ① 政府는 情報 資料의 流通·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 효율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情報協力網(이하 “協力網”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電算化情報시스템을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</li> <li>2. 書誌編纂·情報處理·奉仕活動 및 施設등의 標準化</li> <li>3. 分擔收書·相互貸借·綜合目錄·印刷카드制度 등 圖書館運營의  효율화</li> <li>4. 기타 圖書館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② 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 효율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,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.</p> <p><b>第 42 條 (中央館의 業務)</b>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協力網의 各級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</li> <li>2. 協力網의 機能遂行에 관한 企劃·調整 및 指導</li> <li>3. 協力網 운영의 統轄</li> </ol> <p><b>第 43 條 (地域代表館)</b> ① 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·直轄市 및 道에 두되, 公共圖書館중에서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.</p> <p>② 第1項의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 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필요한 경우에는 市·郡·區(서울特別市·直轄市의 區에 한한다)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.</p> <p><b>第 44 條 (지원·協力)</b> 協力網 機能의 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 필요한 施設·體制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각종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.</p>

신설

신설

신설

신설

舊 法	新 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第 4 章 罰 則</p> <p>第28條(罰金)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開設한 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監督廳의 停館命令에 違反한 者는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</p> <p>第29條(過怠料)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當해 刊行物의 定價의 5배에 相當하는 金額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第 8 章 罰 則</p> <p>第 45 條(協力網의 운영)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을 위하여 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</p> <p>第 46 條(罰金) 第27條(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 경우를 포함한다)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 위반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</p> <p>第 47 條(過怠料) ① 第24條 또는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開設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② 第13條의 規定을  위반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③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 위반한 者는 當해 資料定價의 10배에  해당하는  금액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④ 第3項의 資料가 非賣資料인  경우에는 當해 發行資料原價의 10배에  해당하는  금액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 바에  의하여  文敎部長官·敎育委員會 또는 敎育長(이하“管轄廳”이라 한다)이 賦課·徵收한다.</p> <p>⑥ 第5項의 規定에  의한 過怠料處分에  불복이  있는  者는  그  處分이  있음을  안  날로부터  30日   이내에  管轄廳에  異議를  제기할  수  있다.</p> <p>⑦ 第5項의 規定에  의하여  過怠料處分을  받은  者가  第6項의 規定에  의하여  異議를  제기한  때에는  管轄廳은  지체없이  管轄法院에  그  사실을  통보하여야  하며,  그  통보를  받은  管轄法院은  非訟事件  節次法에  의한  過怠料裁判을  한다.</p> <p>⑧ 第6項의 規定에  의한  期間내에  異議를  제기하지  아니하고  過怠料를  납부하지  아니한  때에는  國稅滯納處分 또는  地方稅滯納處分의  예에  의하여  이를 徵收한다.</p>

舊 法	新 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①(施行日) 이 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</p> <p>②(經過措置) 이 법 施行당시 現存하는 圖書館은 이 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이 법 施行日로부터 2月내에 監督廳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①(施行日)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 다만, 第18條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.</p> <p>②(經過措置) 이 법 施行 전에 設立된 特殊圖書館은 이 법에 의한 特殊圖書館 또는 專門圖書館으로 본다.</p>